

# 감사인 교체기업의 재무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Firms Changing Auditor

##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실증분석 및 해석
- IV. 결 론

이 철 호\*  
(Lee, Cheol Ho)

## I. 서 론

회계감사의 목적이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증기능(attestation role)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감사인의 독립성확보는 회계감사제도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기업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감사인의 주된 책임은 감사보고서의 이용자에 있으며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성실성은 정신적, 실질적인 독립성의 유지에 좌우된다. 그러나 감사인의 정신적 실질적인 독립성에 대한 가장 큰 실제적인 위협은 감사업무 수입이 자유계약 상태하에서 경영진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감사인이 선임되고 유임되며 교체되기도 한다는 것이다.<sup>1)</sup> 이는 경영진이 감사의견이 이

\* 제주국제대학교 경영학과

해관계자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감사인으로 교체시킨다는 위협에 의해서 감사인으로 하여금 적정의견을 주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경영자의 변경, 감사수수료에 대한 마찰, 다양한 감사서비스의 요구, 자본구조의 변화 등도 감사인 교체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sup>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감사인을 교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감사인 교체 동기 요인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감사인 교체동기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전임감사인의 보수적 평가, 대리인비용, 기업의 재무적 상황 등의 여러 변수들로 설명하려는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스피 상장기업들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처럼 기업의 재무적 곤경이 감사인 교체 의사결정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과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의 재무특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이 감사인 교체 후 기업의 재무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이론

#### 2.1.1. 독립성의 의미

독립성은 성실성(integrity)과 객관성(objectivity)을 유지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sup>3)</sup> 여기서 성실성이란 건전한 도덕규범, 정직, 성실함을 의미

1) Kenneth B. Schwartz and Krishmagopal Menon, "Auditor Switches by Failing Firms", The Accounting Review(April 1985), pp.31-36

2) John C. Burton and William Roberts, "A Study of Auditor changes", The Journal of Accounting (April 1976), pp.31-36

3) AICPA Professional Standard, Volume B (New York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82), p.4292

하고 회계감사인에게 적용되는 객관성이란 회계감사업무를 편견 없이 불편부당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실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Cook와 Winkle(1976)<sup>4)</sup>에 의하면 독립성을 사실상의 독립성(independence in fact)과 외관상의 독립성(appearance of independence)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는데 사실상의 독립성이란 정신적으로 독립된 상태(independence in mental attitude)이고 외관상의 독립성이란 회계감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적인 고찰자(reasonable observer)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인 상태라고 한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실질적 독립성, 외면적 독립성, 내면적 독립성으로 세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 ① 실질적 독립성

실질적인 독립성은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항상 자기의 신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우리나라 감사기준의 일반원칙 제7조2항에 의하면 피감사인, 피감사회사의 주주, 임직원, 채권자, 채무자 및 기타 당해 감사의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하여 견해를 배제하고 모든 감사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외면적 독립성

외면적 독립성은 피감사회사와 신분적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피감사회사와 감사인간의 고용관계, 피감사회사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또는 친족관계, 임원관계 등이며 경제적 이해관계자 측에서 보아 감사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결여된 것 같은 인상을 조지 않도록 하는 외면상의 독립성이다. 외면적 독립성의 제 조건은 개인의 소질이나 노력 등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인들의 조직이나 사회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므로 조직적 조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외면적 독립성

4) John W. Cook and Gary M. Winkle, Auditing : Philosophy and Technique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76), pp.46-47

5) 신문철 「회계감사론」 (서울 : 박영사, 1984), pp.63-66

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실질적 독립성이 주관적, 추상적이므로 외면적 독립성에 의해서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객관화되며 실질적 독립성은 외면적 독립의 기초위에서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면적 독립성이 손상된 경우 실질적 독립성이 상실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③ 내면적 독립성

외면적 독립성 혹은 정신적 독립성은 공평무사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갖고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다. 진실한 독립성은 형식적인 관계에서 보다 오히려 정직, 성실, 인격 등의 요소를 기초로 하는 정신적인 독립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신적 태도에 있어서 독립성은 일종의 정신상태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며 객관적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다. 감사는 재무제표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이 표명하는 의견은 가치가 없게 된다.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감사인의 직업윤리에 입각한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들은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합리적인 고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독립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외면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록 외면적 독립성이 정신적인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외관상의 독립성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 2.1.2. 독립성의 중요성

회계감사의 필요성은 주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과는 관련이 없는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보증을 원하기 때문에 강조된다. Kell과 Ziegler에 의하면 회계감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sup>6)</sup>

### ①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제공한 자료가 어떤 일부분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

6) Walter G. Kell and Richard E. Ziegler, Modern Auditing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83), pp. 9-10

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업외부의 독립된 전문가들로부터 보증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② 결과의 중요성(consequence)

재무제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주된 때로는 유일한 자료가 되므로 많은 정보이용자들은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보증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③ 정보의 복잡성(complexity)

정보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은 재무제표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독립된 감사인에 의하여 정보의 질에 대한 보증을 받고 싶어 한다.

④ 직접정보의 결여(remoteness)

직접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은 회사에서 작성보고한 재무제표보다도 제3자에 의해 보증을 받은 재무제표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정보이용자들이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재무제표에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보증을 원하고 있는바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과의 관계에서 감사인이 감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감사의 결과를 통해서 재무제표 이용의 오류나 중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감사인은 공정 불편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해관계자집단의 심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항상 독립성을 지키고 정보이용이 가능한 것을 원하고 이해관계자집단이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독립성은 중요하다.

셋째로 감사인의 배신은 감사인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감사인의 공평 불편한 입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 감사제도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 2.1.3.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이해관계

Goldman과 Barlev(1974)<sup>7)</sup>는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를 크게 경영자, 주주, 제3자로 나누고 이들 집단과 감사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즉 감사인은 잠재적으로 세 가지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 상충된 이해관계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시에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서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① 감사인 피감사회사간의 상충된 이해관계

감사보고서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여부를 채권자들에게는 자금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사실 및 평가사항들을 포함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기업경영자는 제3이해관계 집단 앞에 호의적인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인의 보고서에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은 다만 직업적 기준의 근거에 의해서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기대하고 있으므로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사이에 잠재적으로 상충된 이해관계가 생겨나게 된다.

#### ② 주주 경영자간의 상충된 이해관계

주주들이 경영자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 감사인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만큼 감사인의 보수와 활동의 자유는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주주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감사인으로 하여금 더욱 호의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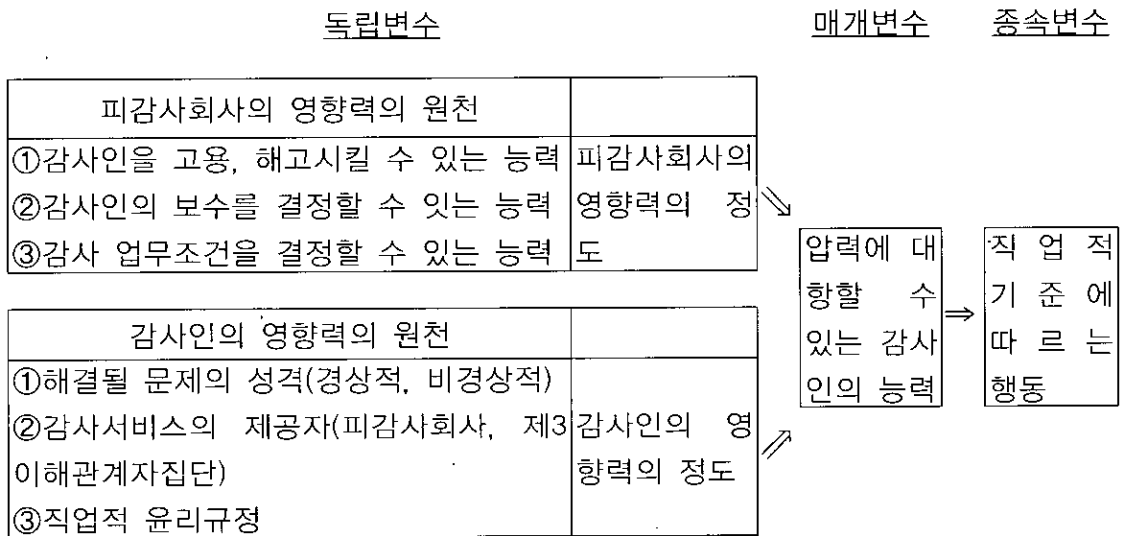
#### ③ 이기주의 직업적 기준과의 상충

전문직업적 집단내에 흔히 있는 것으로 감사인은 자신의 직업적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직업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거절함으로써 손해를 볼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직접 또는 객관적인 경제적 지분을 갖고 있다면 관련사항을 생략하거나 어떤 활동을 왜곡시킴으로써 그것들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좀더 순응적인 회

7) Arie Goldman and Ben Zion Barlev, "The Auditor-Firm Conflict of Interest ; Its Implications for Independence."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74), pp. 707-718

계법인으로 교체된다는 위협 앞에 경영자들의 요구에 동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들은 감사인의 이기주의와 그 직업적 성실성과의 사이에 내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적 규정을 위반하도록 하는 압력은 기업 감사인 관계에 있어서 계속 이어 내려온 것이며 반면에 그러한 압력에 저항하려는 감사인의 능력은 제한받고 있는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Goldman과 Barlev에 의하면 이상에서의 세가지 이해관계의 상충은 감사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의 힘의 균형을 분석하여 독립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행동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독립성에 대한 Goldman과 Barlev의 행동모형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감사회사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피감사회사와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적 직업윤리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2.2. 선행연구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감사인 교체의 원인 및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와 감

사인 교체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사인 교체가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든 아니면 감사인의 자의에 의해서 일어나든 교체동기를 직접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회사경영자의 변경, 감사의 견, 감사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불일치, 감사수수료에 대한 갈등, 피감사회사의 재무적 곤경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을 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Burton과 Robert(1967)<sup>8)</sup>는 감사인 교체의 여러 원인 중 회사의 경영층의 변경을 감사인 교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피감사회사 경영층의 변경은 첫째, 과거의 감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둘째, 자신의 업적평가에 보다 우호적인 감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셋째 경영층의 친분이 두터운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변경하는 성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의 연구는 경영층의 변동이 감사인 교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Schwartz와 Menon(1985)<sup>9)</sup>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황과 관련하여 부실기업의 감사인 교체의 동기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132개의 파산기업과 이와 동수의 건전기업을 대응표본으로 추출하여 두 집단의 파산직전 4년 동안의 감사인 교체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32개의 파산기업 중 35개 기업이 파산직전 4년 내에 감사인을 교체한 반면 건전기업은 13개 기업만이 감사인을 교체하였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건전기업에 비하여 감사인을 교체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사인의 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사의견제한, 보고관련 갈등, 경영층의 변동, 감사보수 등을 언급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감사의견제한, 경영층의 변동과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분석을 했으며 그 결과 이 두 가지는 일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상반되게 유의적인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Kluger와 Shields(1991)<sup>10)</sup>는 한 기업의 경영성과 보고는 주주들의 정보흐름에 영향

8) Burton JC. and W. Roberts "A Study of Auditor Change" Journal of Accountancy (April 1967), pp.31-36

9) Schwartz k and K. Menon (1985), 'Auditor Switches by Failing Firms', The Accounting Review 60(April), pp. 248-261

10) Kluger, B.D and Shields, Do, 1989, 'Auditor changes, Information Quality and Bankruptcy Prediction'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pp. 275-282



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자와 주주 간에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데 이때 경영자가 도덕적 위해의 목적으로 감사인 교체가 일어남을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경영자가 불리한 정보를 은폐 또는 연기하려는 의도에서 감사인 교체를 시도하며 특히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경영자들이 정보은폐를 통하여 회사의 회생에 필요할 시간과 자금을 확보하거나 보유주식을 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고 회사를 떠나려는 목적에서 정보은폐에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할 유인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박종성과 최기호(2001)<sup>11)</sup>는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감사인 교체 방향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교체방향에 따라 감사인 교체 후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재무상황이 좋은 기업은 상향교체를 시도하며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하향교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향교체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인 교체전에 비하여 교체후에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쪽으로의 이익조정이 감소하였으며 하향교체기업의 경우에는 교체후에 오히려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쪽으로의 이익조정이 증가하였다.

김문철과 황인태(1998)<sup>12)</sup>는 전기손익수정항목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사용된다는 관점에서 감사품질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사인 유형을 Big N 제휴법인, 국내 대규모 회계법인 그리고 국내 소규모 회계법인으로 분류하여 피감사회사의 전기손익수정 금액의 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Big N 제휴법인과 국내 대규모 회계법인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국내 소규모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피감사회사의 전기손익수정 금액은 Big N 제휴법인 및 국내 대규모 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의 전기손익수정금액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재홍(2011)<sup>13)</sup>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도입을 통하여 기업들의 감사인의 변경형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전 감사인이 Big4인 경우에는 이후 감사인 또한 Big4로 변경하고, 이전 감사인이 Non Big인 경우에는 Non Big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검정통계량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도입을

11) 박종성, 최기호(2001), '차별적 감사수요와 자발적 감사인 교체',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pp.1-25

12) 김문철, 황인태(1998), '감사의 품질차이가 전기손익 수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pp.1-26

13) 정재홍(2011), '감사인 강제교체에 따른 감사인 변경형태와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통해서 재량적 발생액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감사품질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하였던 유권상장 기업들을 도입전과 도입 후를 비교함으로써 강제교체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감사인의 변경형태에 따라서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전 감사인이 Big4인 경우에 이후 감사인이 Big4로 가는 집단과 Non Big으로 가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감사인의 변경형태에 따라 감사품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지배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경형태에 따라서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를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Ⅲ. 가설설정 및 연구설계

#### 3.1. 가설설정

기업의 재무상태의 악화는 감사인을 교체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의 결과였다. 이들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차입이나 신주발행 등의 목적으로 재무정보를 회사에 유리하게 나타내기를 원하며 이는 회계감사인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피감사회사에 비협조적인 감사인은 교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감사인을 교체하였다는 전체를 상정할 수 있는데 신설법인 및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감사인 교체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감사인 교체 전후에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최관과 백원선(1998)<sup>14</sup>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재무상태가 불량할수록 재무제표를

14) 최관, 백원선(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pp. 49-75

분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공이익 등의 분식결산을 수용하는 감사인을 선호할 것이며 만약 감사인이 경영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자는 감사인 교체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성 최기호(2001)는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감사인 교체방향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교체방향에 따라 감사인 교체후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하였는데 재무상황에 따라 감사인 교체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지훈(2004)<sup>15)</sup>의 연구결과 재무상태가 안 좋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인 교체방향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감사인을 하향 교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계약을 위반하지 않거나 경영자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영자들은 이익을 과대계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경영자의 이익조정동기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강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결과에 따라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에 비하여 이익증가 효과가 클 것이다.

(가설 2)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을 것이다.

또한 피감사회사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감사인이 교체되었다면 감사인이 교체된 후에 감사의견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감사인 교체 전·후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이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효익(1990)<sup>16)</sup>의 연구에서는 피감사인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교체할 수 있는 현

15) 김지훈(2004), '기업의 재무상태와 자발적 감사인 교체 및 교체효과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행의 자유경쟁수임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피감사인에 의한 감사인의 일방적 교체가 감사의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정의견을 받은 피감사인이 의견구매의 목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피감사인의 의도대로 적정의견을 받는 성향이 높으며, 이러한 성향은 피감사인의 조직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의 결과, 전체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등록법인과 기타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받은 피감사인이 다음 연도에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 유입시킨 피감사인과 비교하여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상장법인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연구결과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년도에 한정의견을 받은 피감사인이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 다음 연도에 후속감사인으로 부터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현행의 자유경쟁에 의한 감사수임제도 하에서 피감사인이 의견의 구매를 목적으로 감사인 교체를 시도할 경우, 그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가 되며, 또한 감사인의 교체라는 부당한 압력수단에 의해 후속 감사인의 독립성이 상실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김은과 신용준(2011)<sup>17)</sup>은 감사인 교체 교체와 관련된 감사인 규모 및 재량적 발생액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인 관련 변수인 감사인 교체, 재량적 발생액 및 기업특성 변수들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연도에 교체 이외 기업과 비교할 때 과세소득에 비해 회계이익을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감사인 교체 전후의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을 교체한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교체 전후에 보고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6) 이효익(1990), '감사인의 교체가 한정의견에 미치는 영향-자유수임제도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7) 김은, 신용준(2011), '감사인 교체와 재량적 발생액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PP. 159-185

(가설 3)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감사인 교체연도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가 감사인 교체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될 것이다

3.2. 표본선정

표본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2011년도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코스닥에 상장된 921개 기업(우량기업 216개, 벤처기업 314개, 중견기업 391개)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이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았을 개연성으로 이들 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2011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입수하여 감사인 교체여부를 확인하였고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장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기업들의 재무비율(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본순이익율)을 발췌하였으며 여기에서 자료발췌가 불가능한 28개 기업은 제외하였다. 특히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와 관련된 변수로서는 장휘용(1997)<sup>18</sup>이 부실예측모형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를 참조하여 안정성지표로 부채비율, 성장성지표로 매출액증가율, 수익성지표로 총자본순이익율을 선정하였다.

<표 1> 코스닥등록업체의 표본선정결과

(2013. 2. 28 현재)

		우량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계
총 기업수		216	314	394	924
표본 기업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	162	246	280	688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	51	55	98	204
소 계		213	301	378	892

18) 장휘용(1997), '부실기업표본을 이용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조정행위 분석', 회계학연구. 제22권 제4호, pp.61-99

### 3.3. 실증분석 및 해석

#### 3.3.1. 가설1과 가설2에 대한 실증결과 및 해석

<표 2> 감사인 교체여부 집단간 이익증감 평균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자유도	t	유의확률
감사인 교체여부	유지	688	1.427	0.495			
	교체	204	1.446	0.498	890	-0.474	0.635
합계		892	1.432	0.496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과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 간에 이익증가효과가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한 결과,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의 이익증가율 평균은 1.427로 나타났고,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의 이익증가율 평균은 1.446으로 나타나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보다 이익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t$ 값이  $1.96 > -0.474$ 이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의 교체여부에 따라 기업의 이익증감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감사인 교체여부 집단간 부채비율 평균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자유도	t	유의확률
감사인 교체여부	유지	688	89.426	104.479			
	교체	204	103.964	135.716	890	-1.622	0.104
합계		892	92.751	112.474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과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의 부채비율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89.426으로 나타났고,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103.964로 나타나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보다 다소 높은 부채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t$ 값이  $1.96 > -1.622$ 이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의 교체여부에 따른 부채비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2. 가설 3에 대한 실증결과 및 해석

감사인 교체기업의 감사인 교체 1년 전과 감사인 교체 후의 재무비율(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본순이익율)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표 4> 감사인 교체기업의 재무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량

구분		표본크기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부채비율	교체 전	135	8.7	296.9	80.270	58.343
	교체 후	136	11.3	298.1	86.873	64.477
매출액 증감율	교체 전	135	-20.1	136.4	21.617	27.347
	교체 후	136	-38.3	60.1	4.710	18.918
총자본 순이익율	교체 전	135	-23.5	20.3	4.585	6.999
	교체 후	136	-12.8	15.0	3.197	5.468

감사인 교체기업의 교체 1년 전과 교체 후의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순이익율과 차이가 있는지를  $t$ -test에 의해 검증한 결과 감사인 교체기업의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순이익율 등의 차이분석은 (표 5)와 같다.

〈표 5〉 감사인 교체 1년전과 교체후의 차이분석

구분	대응차		N	상관계수	유의확률	자유도	t	유의확률
	평균	표준 편차						
부채비율	-7.020	34.546	135	0.843	0.000	134	-2.361**	0.020
매출액 증가율	16.914	32.025	135	0.080	0.358	134	6.136***	0.000
총자본 순이익율	1.436	6.105	135	0.543	0.000	134	2.733***	0.007

주) \*\*\*  $p < 0.01$ , \*\*  $p < 0.05$

위 표에 의하면 교체당해년도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감사인 교체기업의 교체 1년 전과 교체 후의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순이익율과 차이가 있는지를 t-test에 의해 검증한 결과 감사인 교체기업의 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본순이익율을 5%, 1%의 유의수준에서 악화되고 있다. 부채비율은 80.270에서 86.873으로 악화되었으며 매출액증가율도 21.617에서 4.710으로 감소되었고 총자본순이익율도 4.585에서 3.197로 감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악화는 감사인을 교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감사인을 교체한 후의 기업의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이익율 등이 오히려 감사인 교체이전보다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지훈(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감사인 교체 직후에 감사인교체로 인한 재무정보의 왜곡현상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재무상태와 영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의견구매에 의한 회계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짧은 시간 내에 재무상태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연구와는 달리 감사인 교체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가 감사인 교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보다 재무상태와 영업성파가 악화되었는지 또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은 감사인을 교체하기 전보다 감사인을 교체한 후에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파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과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 간에 재무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체들 중에서 2010 회계연도에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은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들보다 부채비율이 높고 순이익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 중에서 교체 1년 전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의 재무비율과 교체 후의 재무비율 간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감사인 교체 후의 재무비율이 감사인 교체이전의 재무비율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80.270에서 86.873으로 악화되었으며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도 21.617에서 4.710으로 감소되었고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본순이익율도 4.585에서 3.197로 감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악화는 감사인을 교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감사인을 교체한 후의 기업의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이익율 등이 오히려 감사인 교체이전보다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재무상태와 영업성파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의견구매에 의한 회계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재무상태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과제로는 감사인의 교체여부를 단순히 2011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또한 표본의 수가 많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는 점과 재무상태와 영업성파의 지표로 한가지의 안정성지표, 성장성지표, 수익성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본 논문의 유용성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향후에는 표본의 수를 확장하고 재무상태와 영업성파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행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문철, 황인태(1998), '감사의 품질차이가 전기손익 수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pp.1-26
- 김 은, 신용준(2011), '감사인 교체와 재량적 발생액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pp. 159-185
- 김지훈(2004), '기업의 재무상태와 자발적 감사인 교체 및 교체효과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성, 최기호(2001), '차별적 감사수요와 자발적 감사인 교체',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pp.1-25
- 신문철(1984), 「회계감사론」 서울, 박영사, pp. 63-66
- 이효익(1990), '감사인의 교체가 한정의견에 미치는 영향-자유수입제도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휘용(1997), '부실기업표본을 이용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조정행위 분석', 회계학연구 제22권 제4호, pp.61-99
- 정재홍(2011), '감사인 강제교체에 따른 감사인 변경형태와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 관, 백원선(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pp. 49-75
- Kenneth B. Schwartz and Krishmagopal Menon(1985), "Auditor Switches by Failing Firm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pp.31-36
- John C. Burton and Willian Roberts(1976), "A Study of Auditor changes", The Journal of Accounting (April), pp.31-36
- AICPA Professional Standard, Volume B (New York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82), p.4292
- John W. Cook and Gary M. Winkle(1976), Auditing : Philosophy and Technique (Boston : Houghton Mifflin Co.), pp.46-47

- Walter G. Kell and Richard E. Ziegler(1983), Modern Auditing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pp. 9-10
- Arieh Goldman and Benzion Barlev(1974), "The Auditor-Firm Conflict of Interest ; Its Implications for Independence."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pp. 707-718
- Burton JC. and W. Roberts(1967), "A Study of Auditor Change" Journal of Accountancy (April), pp.31-36
- Schwartz k and K. Menon (1985), 'Auditor Switches by Failing Firms', The Accounting Review 60(April), pp. 248-261
- Kluger, B.D and Shields, Do(1989), 'Auditor changes, Information Quality and Bankruptcy Prediction'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pp. 275-282

## 국문개요

회계감사의 목적이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제3자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증기능(attestation role)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감사인의 독립성확보는 회계감사제도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스피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처럼 기업의 재무적 곤경이 감사인 교체 의사결정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과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의 재무특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이 감사인 교체 후 기업의 재무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과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 간에 재무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 기간중에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은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기업들보다 부채비율이 높고 순이익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 중에서 교체 1년 전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의 재무비율과 교체 후의 재무비율 간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재무상태와 영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의견구매에 의한 회계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재무상태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